

통합공고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라 수출입 요건확인 및 무역질서 유지를 위해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수입물품의 수출입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 및 통합 규정한 「통합공고」의 일부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해당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이유

- 세계관세기구(WCO)의 HS 체계 개편에 따른 품목 코드 및 기관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1. 조문 정비

- (1) 기관명칭 변경사항 반영 (제133조, 제134조)
 - 농촌진흥청 산하 공공기관의 명칭 변경을 내용으로 「농촌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531호, 2021. 11. 30. 공포, 2022.3.1.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2) 임상시험의약품 관련 제출자료 요건 확대 (제33조의2)
 -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제34조제4항을 반영하기 위해 치료 목적 사용을 위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수입 시 제출자료 요건 확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8조 5항의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연구 등 목적 사용승인서’ 추가)

2. 세계관세기구(WCO)의 HS 체계 개편에 따른 품목코드 변경사항 반영

- 수출요령(별표1), 수입요령(별표2), 특정화학물질(별표13), 생물작용제 및 독소(별표13의2), 중국 및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검사대상 품목(별표15), 미국수출 패류 검사대상 품목(별표 17) 개정

I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2년 3월 24일 까지

2. 제출방법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무역정책과장)에게 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 전자우편 : iamaboy1@korea.kr
- 팩스 : 044-203-4710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통합공고 행정예고문

I Contact



김동주 관세사
T 032-742-8250
E djkim@esein.co.kr



허윤희 관세사
T 070-4353-1593
E yhheo1@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2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